

2021년도 제35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1. 11. 24.(수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최승수(분과위원장), 김경숙, 노정동, 박성호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1-338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강나래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모바일 앱 불법성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360건(안건번호 제2021-164971호~165663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1-164971호~164977호(순번 1번~7번)는 블로그에서 영상물의 일부를 제공하고 있는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의 저작물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적절하지 아니하여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1-164978호~165018호(순번 8번~48번)는 블로그 등 웹사이트에서 다수의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967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모바일 앱 불법성 심의
 - 주요내용: 저작권을 침해하는 '구글 플레이' 게시 '앱'에 대해 '구글' 내 삭제 협조 요청 여부(안건번호 제2021-1호)

- 회의결과: 음악저작물과 관련한 법리 및 주어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심의대상 앱에서 제공 중인 코드 악보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삭제 요청의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구글'에 심의대상 앱의 삭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최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35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최를 선언함.

2. 전차(제2021-338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강나래 전문위원: 제1호 안건 회의록과 관련하여 5쪽의 카페명, 6쪽의 카페명, 게시판명, 7쪽의 OSP명, 실연자명, 게시자명, 8쪽의 게시물 내용, 댓글 내용, 게시판명, 게시물명, 게시자명, 실연자명, 9쪽의 실연자명, 권리출판사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B 위원: 제1호 안건의 해당 부분은 비식별 처리함이 타당함. 나머지 부분은 전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C, A,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카페명, 게시판명, OSP명, 실연자명, 게시자명, 게시물 내용 등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3. 안건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강나래 전문위원: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나래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44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1,360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7번은 2명의 민원인이 실명으로 신고한 건임. 블로그에서 다수의 일본 및 중국 애니메이션(이하 '원저작물'이라고 통칭함)의 영상 일부를 제공 중인 사안임. 총 12개 게시물이임.

(합법 시장 내 원저작물 제공 현황 자료를 제시하면서)원저작물은 왓챠, 웨이브 등 OTT 서비스를 통해 국내 합법 시장에서 제공 중이며, 각 회차는 20분에서 30분 정도 분량임.

각 심의대상 게시물의 원저작물 이용 형태에 차이점이 있는바, 이하에서는 분류하여 검토함.

(순번 1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먼저, 순번

1번은 게시자가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 “▶▶▶▶▶ ▶▶▶▶▶” 카테고리에서 “▶▶▶ ▶▶▶▶▶▶”라는 제목으로 일명 ‘매드무비(Mad Movie)’라고 불리는 콘텐츠를 제공 중인 사안임. ‘매드무비’란, 기존에 있는 영상, 그림, 음악 등을 편집하여 제작된 새로운 영상물을 뜻하는 단어로, 대표적인 UCC(User Created Contents) 중 하나임.

통상 주제를 정하여 그에 맞는 영상만을 편집 후 이어붙이는 방식으로 제작되며, 단순히 영상을 잘라내어 붙인 일차원적인 수준부터 각종 영상 효과, 자막 등을 활용한 합법 시장 수준의 것까지 형태가 다양함. 원저작물의 주제나 내용에 완전히 반하거나, 무관한 여러 저작물을 편집하여 세계관을 합치는 경우도 있음.

저작권법에 따르면,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 등의 방법으로 작성하여 별도의 창작성이 더해진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차적저작물로 인정됨. 이때 2차적저작물에 대하여서는 원저작물과 독립된 별도의 권리가 발생함. 심의대상 게시물과 같은 저작물 이용 형태에 대하여서 2차적저작물성 인정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으나, 이는 법원 판단의 영역으로 우리 심의위원회가 판단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할 것임. 다만, 2차적저작물로 인정된다고 보아도 원저작물 저작자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원저작물 저작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로 볼 수 있으므로 2차적저작물성과는 관계없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다만, 저작권법 제35조의5 공정이용 해당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합법 시장에서 유료로 제공 중인 영상물을 제공 중인 점은 공정이용 판단의 소극적 요소로 인정되나, 심의대상 게시물 및 블로그에서 불법복제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함.

더불어, 약 17,000분 분량의 전체 시리즈의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15분 분량을 이용 중인 점,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편집 및 구성된 매드무비가 원저작물을 대체하여 합법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의 저작물 이용을 공정이용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순번 2번, 4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순차적으로 접속하여 보여주면서)다음으로, 순번 2번~7번의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원저작물 중 특정 인물의 전투 장면, 작품의 특징 또는 캐릭터 정체성이 나타나는 장면 등 특정 주제의 장면을 편집하여 이용 중임.

다만 순번 1번과는 달리 특정 장면의 앞뒤 부분을 잘라내어 추출한 것으로, 특별히 창작성이 더해졌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음. 따라서 권리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 중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저작권법 제35조의5 공정이용 해당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합법 시장에서 유료로 제공 중인 영상물을 제공 중인 점, 한 회차의 1/3에서 1/2 분량을 이용 중인 점은 공정이용 판단의 소극적 요소로 인정된다고 할 것임.

그러나 시리즈로 제작된 애니메이션의 특성상 앞선 내용이나 기타 등장인물, 배경 등에 대한 설명이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원저작물의 주된 내용을 파악할 수 없고, 시장 대체 가능성 및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 역시 불분명하다고 할 것임.

또한 순번 3번~7번은 심의대상 게시물 및 블로그에서 불법복제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함. 순번 2번의 경우 게시물 하단에 광고 링크가 확인되어 영리 목적을 인정할 수 있겠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을 가지고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을 부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이를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의 저작물 이용을 공정이용으로 볼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임.

순번 2번~7번은 원저작물 한 회차의 특정 장면을 편집하여 비영리
적 목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따라서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종합하면, 순번 1번~7번은 각 심의대상 게시물의 저작물 이용이 공정
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하
기에 부적절하다는 판단하여 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
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
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D 위원: 순번 1번과 유사한 사안으로 법원에서 소송 진행 중인 건이
있는지?
- 강나래 전문위원: 매드무비 등과 같이 원저작물을 편집하여 이용하
는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사안으로, 파
악한 바로는 현재까지 특별한 사안은 없음. 다만 일본에서는 애니메
이션 제작사 ▶▶▶▶가 강경 대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A 위원: 설령 심의대상 게시물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 133조의3의 시정권고 제도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권리자에게 회복 불능의 손해를 미친다거나 권리 구제의 긴급성
을 요하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일본에서 문제가 된 사안의 경우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예를 들어, 로맨스 애니메이션인 원저작

물의 장면과 대사를 이용하여 성인 애니메이션으로 편집하여 제작함으로써, 당초 원저작물이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 의식과 기획 의도, 줄거리를 완전히 변경하는 것임. 서브 컬처에 대한 이해가 높은 일본임에도 불구하고 원저작물의 기획 의도를 크게 훼손한 점이 인정되어 예외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강경하게 대응한 것으로 판단됨.

- D 위원: 검토보고서만 보면 매드무비 콘텐츠 자체가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오인될 가능성이 있음. 해당 콘텐츠 자체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사안마다 달리 평가될 수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됨. 다만 사안의 경우 저작권법 제 133조의3 시정권고 제도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시정권고 필요성이 인정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다소 있어 부결에는 동의함.
- C 위원: 안건을 크게 순번 1번과 순번 2번~7번으로 구분한 취지는 무엇인지?
- 강나래 전문위원: 순번 1번의 경우, 영상저작물의 장면과 대사를 재구성하여 원저작물의 주제 및 기획 의도와 다르게 재편집되었다면, 순번 2번~7번의 경우 원저작물의 전투 장면 등 특정 장면의 앞뒤 부분을 단순 잘라내어 추출한 것으로 창작성이 더해졌다고 보기에 어려움. 따라서 편집 방식에 따른 창작성 쟁점이 있는 사안과 그렇지 않은 사안으로 구분하였음.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 본문에 게시자가 직접 작성한 어문저작물도 함께 게시되어 있는지?

- 강나래 전문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을 보여주면서)순번 2번의 경우에만 영상저작물 하단에 전투 장면의 등장인물 이름과 간단한 설명이 작성되어 있음.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의 저작물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적절하지 아니하여 부결 의견임.
- D 위원: 순번 1번~7번은 블로그에서 영상물의 일부를 제공하고 있는 사안으로, 각 심의대상 게시물의 저작물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저작권법 제133조의3의 취지에 비추어 긴급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적절하지 아니하여 부결함이 타당함.
- C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특히 순번 1번의 경우 심의대상 게시물의 저작물 이용이 공정이용의 변형적 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는 판단임.
- A 위원: 블로그에서 전송 중인 불법복제물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35조의5의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저작권법 제133조의3의 시정권고 제도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7번은 시정권고를 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8번~48번은 6명의 민원인이 실명, 익명으로 각각 신고한 건임. 블로그 등 웹사이트에서 각 해외 영화, 방송, 만화의 불법복제물을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총 381개 게시물임.

(순번 9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접속하여 보여주면서)해당 저작물의 1화를 2개의 영상으로 나누어 스트리밍 형식으로 전송하고 있으며, 네이버 시리즈온, 왓챠 등에서 유료로 제공하고 있음.

(순번 43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접속하여 보여주면서)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를 통해 합법 시장에서 유통되는 저작물의 전체 분량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순번 47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접속하여 보여주면서)해당 저작물의 1화~5화 전체 분량을 30 포인트에 판매하고 있으며, 네이버 시리즈에서 유료로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여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시정권고의 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여 가결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8번~48번은 게시물에 대해 삭

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순번 49번~693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총 게시물 수는 967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게임,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SW 'Adobe illustrator CC 2021'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79번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SW 'Adobe illustrator CC 2021'을 70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자동인증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한 프로그램을 제공 중일 가능성이 매우 큼. 권리자 홈페이지에서 무료 체험용 프로그램을 제공 중이며, 라이선스 이용료는 1개월에 24,000원임. (영화 '007 노 타임 투 다이'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354번은 모바일 웹하드에서 영화 '007 노 타임 투 다이'를 470 캐시에 판매 중인 사안임. 영화 전체 분량인 약 163분을 mp4 파일 다운로드 방식 및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 중함. 2021. 9. 29.에 개봉한 미국 영화이며, 네이버 시리즈온에서 8,000원에 대여, 11,920원에 구매 가능함. (영화 '레드 노티스'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537번은 모바일 웹하드에서 영화 '레드 노티스'를 490 캐시에 판매 중인 사안임. 전체 분량인 약 117분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 중임. 2021. 11. 21.에 공개한 미국 영화이며, 넷플릭스 가입 후 시청 가능함.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순번 49번~693번은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49번~693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1-164971호~164977호(순번 1번~7번)는 부결하고, 안건번호 제2021-1649778호~165663호(순번 8번~693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제2호: 모바일 앱 불법성 심의

제2호 안건에 관한 회의록은 13쪽부터 18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모바일 앱 불법성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1-1호(순번 1번)의 모바일 앱 불법성 심의를
부결함”

4. 폐회 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이 제35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1년 제35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12. 1.

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김경숙

위원 노정동

위원 박성호